

	보 도 자 료	
	6.18(목) 14:00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,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	
책 임 자	[금융위원회] 이윤수 과장 (02-2156-9810)	담 당 자	[금융위원회] 송용민 사무관 (02-2156-9812)
	[금융감독원] 류찬우 국장 (02-3145-8020)		[금융감독원] 임채울 부국장 (02-3145-8022)
배 포 일	2015.6.18.(木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2매

제 목 : 「인터넷전문은행」이 도입됩니다.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
- 예금, 대출,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·활용

-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
 - (진입장벽) 산업자본 지분보유 50% 허용, 최저자본금 500억원
 - (사전규제) 예·적금, 대출, 신용카드,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
- 단계적 추진전략(Two-Track approach)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
 - (1단계)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~2개 시범인가
 - (2단계)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
- 7월 인가매뉴얼 발표,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, 이르면 올해 내에 1~2개 예비인가

I. 추진 배경

-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활발히 도입·운영 중

<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개요 >

- (현황) '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에서 20여개, 유럽에서 30여개, 일본에서 8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 중(최근 중국도 2개 인가)
- (소유구조) 은행계(주로 Division형태), 2금융권(증권·보험·카드) 회사, 기업계(유통, 자동차 등), 합작(은행+통신, 은행+포털) 형태 등 다양
- (사업모델) 모기업·계열사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특화(Niche-Market)하는 등 대체로 기존은행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영업
- (시장점유율) 은행산업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~3% 수준(총자산 기준)

- '금융개혁' 주요과제로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활용, 이용자 수요 충족 및 금융서비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

→ '15.1~4월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제별 집중토론,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(4.16)를 통해 의견수렴한 후, 금융개혁자문단(6.10) 및 금융개혁회의(6.3, 6.18)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

II. 도입 방안

< 기본 방향 >

- ◇ 은산분리 규제,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 →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
- ◇ 업무범위, 건전성·영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규제 최소화 →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 출현 유도
- ◇ 외부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인가절차 진행 →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플레이어 위주로 진입 허용

1

소유구조 :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

- (현행) 비금융주력자*(산업자본)는 은행 지분 4% 초과** 보유할 수 없음
 - *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\geq 전체자본의 25% 또는 비금융회사 자산합계 \geq 2조원 등
 - ** 단,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(금융위 승인을 받아) 10%까지는 보유 가능
- (문제점)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기업* 등을 비롯한 창의성·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
 - * ICT기업 분류: portal, communication(통신), community(SNS, 메신저 등), e-commerce(전자상거래) 등
 - 특히, 모회사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 사업 추진, 상당수의 고객(critical mass) 조기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익모델 구축 어려움
- (도입방안)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
 -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상향 조정 : 4% \rightarrow 50% (단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)
- (보완방안)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
 -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(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)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
 - * '14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음. 단, 이중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를 미적용(현재도 은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음)
 -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(50%)까지만 완화하여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 유지
 - * 정관변경, 영업양도, 이사해임, 감사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는 주주 2/3 이상의 찬성 필요(상법 §434)
 -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
 -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: (현행) 자기자본의 25% 및 지분율 이내 \rightarrow (변경) 자기자본의 10% 및 지분율 이내
 -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: (현행) 자기자본의 1% 이내 \rightarrow (변경) 금지

2

최저자본금 : 하향 조정

- (현행)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(시중은행 기준)
 - (도입방안)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 : 500억원
- ※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

3

영업범위 : 일반은행과 동일

- (현행) 일반은행은 고유업무, 겸영·부수업무 영위 가능하며, 지방은행·외은지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

- 고유업무 : 예·적금의 수입, 자금의 대출, 내·외국환 등
- 겸영업무 : 신용카드업, 보험대리점(방카슈랑스),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
- 부수업무 : 채무보증, 어음인수, 보호예수, 수납 및 지급대행 등

- (도입방안)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
 -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 유도
 - *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

□ (현행) 은행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(BCBS)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운영 중

* 주요규제 : (자본적정성) BIS자기자본비율, (자산건전성)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, (유동성)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, 예대율 등

○ 또한,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행위 규제*도 적용

* 설명의무, 공시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광고 제한 등

□ (도입방안) 주요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

○ 다만,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 인정(기간 경과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아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)

< 도입 초기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사항 >

○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일반은행은 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,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Basel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asel I 기준 적용

* Basel I 방식에서는 대출,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, BaselⅢ 방식에서는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

○ 유동성 규제(LCR)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(60%) 우선 적용

*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= 현금·국채 등 고유동성자산/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, 적용한도(일반은행/특수은행, %): '15년 80/60 → '19년 100/100 적용(매년 5/10씩 상향)

가. 전산설비 구축 : 외부위탁 가능

-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

※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, 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(“ 「정보처리 위탁규정」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” 보도자료(6.10일) 참고)

나. 신용카드업 영위 : 가능

- 경영여신업자(신용카드업)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, 300명 이상의 임·직원 등 요건 충족 필요

⇒ 신용카드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,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상 예외 인정

다.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: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

-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(face-to-face) 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

⇒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

(개선방안 기 발표(15.5월), 금년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)

- *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, 영상통화,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, 기존계좌 활용, 상기 4가지 방식 외에도 활용 가능

- (인가심사기준)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
- 다만,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다음 사항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

① 사업계획의 혁신성(Innovation)

-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
-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

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(Stability)

-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

③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(Consumer Convenience)

-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
-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

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(Competitiveness)

- 차별화된 금융기법,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 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

⑤ 해외진출 가능성(Global Expansion)

-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

- 또한, 영업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인 심사기준 추가

* 예 :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었는지,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

⇒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배포함으로써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 제고

- (인가절차)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‘외부평가위원회’ 구성·운영
 - 핀테크·금융계·학계·소비자·법조계·재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 하되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
 - 신설 인가이고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개별 전별·순차 심사 보다는 일괄신청·접수 후 일괄심사로 진행

금융개혁회의(6.18)시 주요 논의사항

◇ 오늘 오전 제5차 금융개혁회의(6.18)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, 최저자본금 규모,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음

-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으로 비금융 주력자 지분보유한도를 상향조정(4%→50%)하는 방안과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,
 - 주주간 견제와 균형, 금융회사 등 다양한 주주의 참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였음
 - * 다만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음
-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과 동일(1천억원) 하게 적용해야 하는지,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게(5백억원) 타당할지 논의한 결과,
 -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
 - * 사업모델에 따라 최저자본금 규모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, 인가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기로 하였음
-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지, 일부업무는 사전에 제한할지 논의한 결과,
 - 다양한 사업모델 가능성, 일반은행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하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

Ⅲ. 도입시 기대효과 : 한국형 핀테크 활성화의 큰 전환점

< 금융소비자 : 점포방문없이 은행이용 가능, 낮은 금리·수수료 혜택 >

- 점포방문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,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예상

※ Hello Bank(프랑스): 스마트폰,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% Mobile-Only Bank

-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

※ WeBank(중국):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,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→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

< 은행 산업 :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 → 은행간 경쟁 촉진 >

-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,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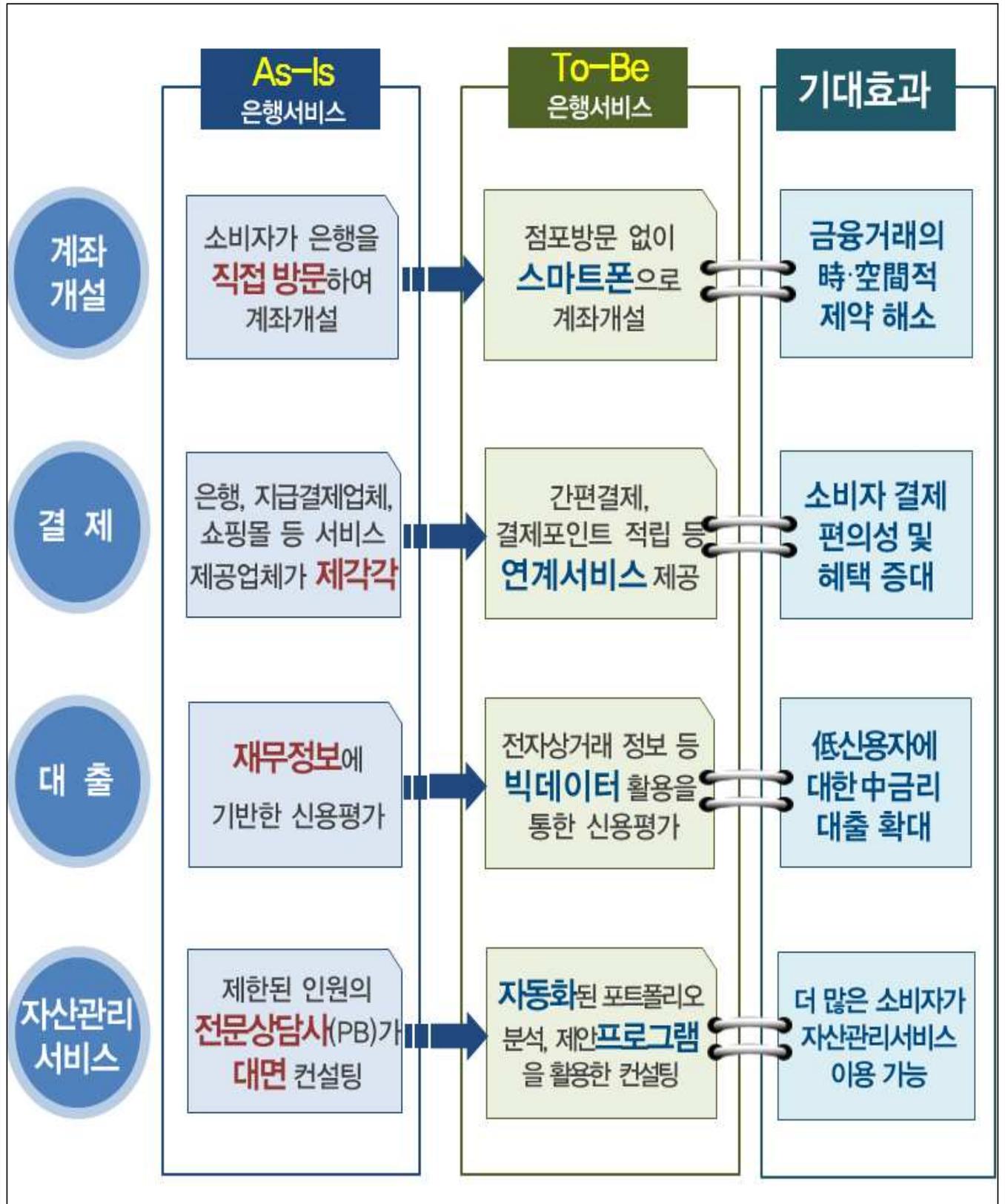
※ Rakuten Bank(일본):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 →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,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

< 국민 경제 : IT·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>

-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,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 효과,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도 기대

※ 일본: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만으로 약 2천여명의 직원 고용 창출, ING Direct(네덜란드): 적극적인 해외진출 → 독, 프, 이 등 6개국에서 사업영위 중

<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>



IV. 향후 계획

- ◇ 조기출현 및 성공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
- ◇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

< 1단계 : 시범적으로 인가 >

-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~2개 시범 인가
 - 법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 가능
 -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**Test Bed**로 활용

※ 미국, 영국, 일본 등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1개만 인가한 후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가며 1~2년뒤에 추가 인가한 사례

- **예상일정:** 인가매뉴얼 대외공개(7월초, 공개설명회(7.22)) → 예비인가 신청 접수(9월중) → 심사(10~11월) → 예비인가(12월) → 본인가('16년 상반기)

< 2단계 : 본격적으로 인가 >

-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
 - 플랫폼사업자, 핀테크업체 등을 비롯하여 시너지를 낼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도록 유도

- 시범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, 향후 성장가능성, 추가 신청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본격 인가

- 예상일정: 은행법 개정안 마련(6~7월) → 9월 정기국회 논의 → 인가 신청 접수 및 예비인가(법 시행후 6개월 이내,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와 동일하되 인가소요기간 최대한 단축)

[별첨1] 핵심 Q&A

[별첨2]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